

안성초등학교 규칙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최종안)

[시행 2021.3.1.] [안성초등학교, 2021.2.0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초등학교의 학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안성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
2. “조기졸업”이란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5학년 과정을 마친 후 바로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
3. “조기입학”이란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4. “상급학교 조기입학”이란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을 마치고 바로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4조(수업 연한) 안성초등학교(이하 “안성초”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학기) ① 안성초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하며, 학년도마다 한 학년씩 진급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과 관련하여 안성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은 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안성초의 학년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학년도는 두 학기로 나누며,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안성초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여름휴가)
3. 겨울방학(겨울휴가)
4. 학년말방학(학년말휴가)
5. 개교기념일
6. 토요일
7.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재량휴업일)

② 학교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업에 관한 사항을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업일에도 안성초 학생을 등교시킬 수 있다.

④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 편성) 안성초의 학급은 같은 학년의 학생으로 편성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한 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안성초의 학급 수와 학급당 정원은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의 인정·졸업

제9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육감이 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안성초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② 안성초의 기본 교과는 국어, 사회, 도덕,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등과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한다.

③ 학교장은 안성초에 특수학급을 편성한 경우에는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은 안성초의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제10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① 안성초의 수업은 주간제(晝間制)·전일제(全日制)로 한다.

② 학교장은 수업의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정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교환학습(1개월(4주) 이내), 단체 교환학습(2주일 이내), 가정학습을 포함한 개인 교외체험학습(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이하 이 조에서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을 판별한다.

③ 학교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한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④ 안성초의 교원은 법 제28조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4조제7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慮)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것을 따른다.

제12조(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제10조6항에 따른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수업일수) ① 안성초의 매 학년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법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경우에는 제출한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를 산정한다.

제14조(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활동) 학교장은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나 방학기간 중에 방과 후학교(돌봄교실 포함)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평가) ① 학교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안성초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안성초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안성초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안성초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졸업장을 준다.

제5장 입학·전입학·재취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7조(입학) ① 안성초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학년도의 입학 대상 아동으로서 안성초의 통학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면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한 아동은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할 수 있다.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해당 면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아동은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할 수 있다.

④ 다른 학교의 입학 대상자로 지정된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안성초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⑤ 학교장은 제4항에 따라 입학할 승낙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안성초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안성초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과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⑤ 학교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19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이 조에서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영 제28조제2항·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호와 제2호 외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전학절차) 다른 학교 학생이 안성초에 전입학하거나 안성초의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출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영 제21조를 따른다.

제21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과 전학) 귀국 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에 대한 전입학 절차와 방법은 영 제19조를 따른다.

제22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은 교육감이 정한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학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자,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교육장 등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⑦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유예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

우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② 학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나 제20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안성초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성초등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 제24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학교장은 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우수한 안성초 학생에게 수업연한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 ③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25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설치)**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안성초등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기타의 비용 징수

- 제26조(수업료·입학금)** 안성초의 학생과 학부모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27조(기타 비용)**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학생생활·학생자치활동·학부모회

- 제28조(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장은 안성초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학생 스스로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안성초 학생의 인권을 포함한 학교생활(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초등학교 생활규정에 따른다.
- 제29조(학생자치)** 학교장은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정·운영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안성초등학교 생활규정에 따른다.

제30조(학부모회 조직·운영)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안성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회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칙 개정

제3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학교장은 안성초등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안성초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생·학부모·교원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개정안 제출·발의) ① 학교장은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학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학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안성초 교원의 과반수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2. 안성초 학생회(어린이회)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3. 안성초 학부모회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학부모회의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 또는 변경으로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정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후 운영위원회에 사후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33조(개정안 의결·공포) ① 심의위원회는 제29조에 따라 제출·발의된 학칙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의결한 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넘긴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학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결된 학칙 개정안을 학교장에게 보낸다.

③ 학교장은 이송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정 학칙을 공포한다.

제34조(연수 및 교육)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정 학칙에 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안성초등학교 누리집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개정 학칙을 안내한다.

제10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제35조(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학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제3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학교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안성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21.2.00.)

제1조(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본 학교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